

을 해제하고자 한 것으로 구역 변경안에는 동의의견임.

※변경구역에 대한 도면을 보면, 구역 해제지역에 조합주택을 건설하여 존치지역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나, 존치지역이 지형상 장방형을 이루고 있고, 고지대에 아파트를 건축할 시 스카이라인 조정 등 다소 어려운 문제점이 예상되어 사업시행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.

5. 심사결과  
보 류

의안 번호	63
----------	----

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
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3. 주요요지
  - 위 치 : 서초구 양재동 12 일대 및 서초동 1366 일대
  - 내 용
    - 용도지역변경 : 일반주거지역→일반상업지역 (43,230㎡)
    - 용도지구지정 : 도시설계지구(43,230㎡)
    - 주민의견 청취결과
      - 양재동 24 일대 상업지역 추가지정 요망(미반영)
      - 서초동 1365-16 일대 상업지역 추가지정 요망(미반영)
      - 서초동 1360-45 일대 상업지역 추가지정 요망(미반영)
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
  - 본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의 건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서초구 양재지구 중심지역인 양재동 12 일대 및 서초동 1366 일대 43,230㎡의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서, 아울러 같은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,
  - 이 지역 양재중심지구를 육성 발전시키기

위한 상업지역으로 변경은 타당한 변경안으로 사료되며 특히, 이 지역에 대한 도시미관과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도시설계지구 지정은 인접지역과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제출한 지구지정안에 동의의견임.

5. 심사결과  
보 류

의안 번호	64
----------	----

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
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3. 주요요지
  - 위 치 : 서초구 방배동 444-4 일대
  - 내 용
    - 용도지역변경 : 일반주거지역→일반상업지역 (25,560㎡)
    - 용도지구지정 : 도시설계지구(25,560㎡)
    - 주민 의견청취 결과 : 없음.
    - 방배2동 452-1 일대 상업지역 추가 지정 요망(미반영)
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
  - 서초구 방배동 444-4 일대 남현지구 중심지역에 대한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결정안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합당하여 시의 변경결정안에 동의의견이며,
  - 또 이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과 함께 남현지구 중심지를 중심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서 타당한 지정안으로 사료됨.
5. 심사결과  
보 류

의안 번호	65
----------	----

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 ○위 치 : 서초구 방배동 3000 일대 ○내 용 •용도지역변경 : 일반주거지역→일반상업지역 (39,840㎡) •용도지구지정 : 도시설계지구(39,840㎡) •주민 의견청취 결과 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○서초구 방배동 3000 일대 39,840㎡에 대한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이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(안)은, ○시 및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던 지역이며, 이 지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도시미관과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특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, ○시에서 제출한 (안)대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변경결정 및 지구지정안에 동의의견임.</p> <p>5. 심사결과 보 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3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 <p>3. 주요요지 ○내 용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위 치</th> <th colspan="2">용도지역변경</th> <th rowspan="2">용도지구 지정</th> <th rowspan="2">면적(㎡)</th> <th rowspan="2">비 고</th> </tr> <tr> <th>당 초</th> <th>변 경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강서구 화곡동 1064, 1065, 1074, 1076 일대</td> <td>준 주 거 지 역</td> <td>일반상업 지 역</td> <td>도시설계 지구</td> <td>22,499</td> <td rowspan="2">신월 지구 중심</td> </tr> <tr> <td>강서구 화곡동 1051, 1052, 1063, 1074, 1076 일대</td> <td>일반주거 지 역</td> <td>일반상업 지 역</td> <td>(59,805㎡)</td> <td>37,306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의안 번호	73	위 치	용도지역변경		용도지구 지정	면적(㎡)	비 고	당 초	변 경	강서구 화곡동 1064, 1065, 1074, 1076 일대	준 주 거 지 역	일반상업 지 역	도시설계 지구	22,499	신월 지구 중심	강서구 화곡동 1051, 1052, 1063, 1074, 1076 일대	일반주거 지 역	일반상업 지 역	(59,805㎡)	37,306	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 ○위 치 : 강서구 등촌동 656, 658 일대 ○내 용 •용도지역변경 : 일반주거지역→일반상업지역 (32,638㎡) •용도지구지정 : 도시설계지구(13,174㎡) •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 •주민 의견청취 결과 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○강서구 등촌동 656, 658 일대 화곡중심지 32,638㎡에 대해 현재의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안은 이 지역을 중심기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변경안으로 타당한 (안)으로 사료되며, ○이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시설계지구 지정도 타당한 (안)으로 사료됨. ※이 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상 화곡지구 중심지역임.</p> <p>5. 심사결과 보 류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4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	의안 번호	74
의안 번호	73																							
위 치	용도지역변경		용도지구 지정	면적(㎡)	비 고																			
	당 초	변 경																						
강서구 화곡동 1064, 1065, 1074, 1076 일대	준 주 거 지 역	일반상업 지 역	도시설계 지구	22,499	신월 지구 중심																			
강서구 화곡동 1051, 1052, 1063, 1074, 1076 일대	일반주거 지 역	일반상업 지 역	(59,805㎡)	37,306																				
의안 번호	74																							